

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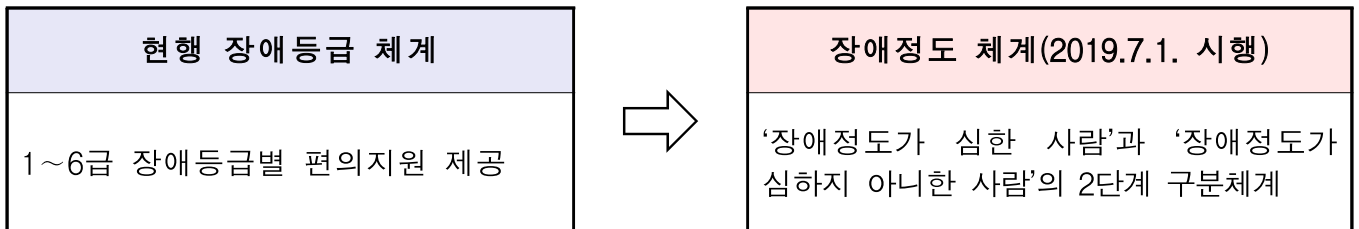
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[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-14호(2019.2.28.), 제2019-27호(2019.4.3.), 제2019-37호(2019.5.8.)]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3일

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변경사항

-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(6등급)에 따라 제공 중인 장애인 편의지원을 장애정도(2단계)에 따른 지원 체계로 변경(붙임 1 참조)



2.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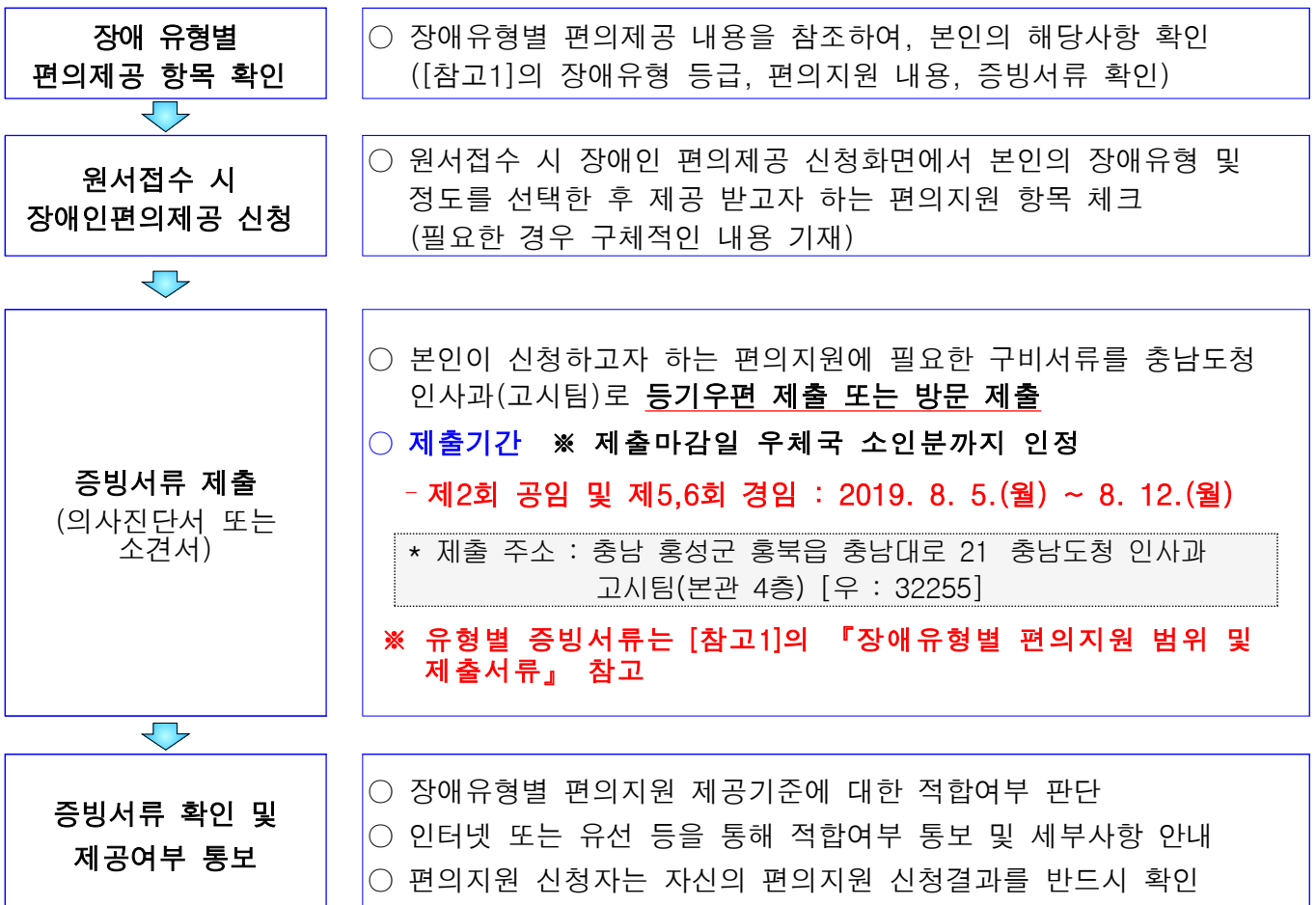
1.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『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 [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-14호(2019.2.28.), 제2019-27호(2019.4.3.), 제2019-37호(2019.5.8.)]와 동일합니다.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」 또는 인사과 고시팀 (☎ 041 - 635 - 35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
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

1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**
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,
 - 시각·지체·청각·뇌병변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 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

2 편의지원 신청 절차



3 편인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

1. 장애유형별 편인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여부, 증빙서류 및 편인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'장애유형별 편인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참고2)'를 확인 [의사진단 (소견)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]
2.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인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※ 시험시간 연장 편인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
3.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.([참고2]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)
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, [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\(www.hira.or.kr\)](http://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4. 2018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인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.
5.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팀(041-635-35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 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
지체 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없음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기존 4~6급	
하지	장애정도가 심한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	기존 1~6급	
뇌병변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없음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기존 4~6급
시각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	의사 진단서 1부	기존 1~2급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1부	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없음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1부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없음	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없음	기존 4,5급 1호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의사 진단서 1부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·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기존 5급 2호, 6급
	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	없음

- ※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-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- ※ 수학,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2.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

구 분	제2회 공임 및 제5,6회 경임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19년 8월 9일
진단서(소견서) 발급일	2017년 8월 9일 이후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)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(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)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 -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
시 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 ~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(구 3급2호~ 4급2호)	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임 신 부		상기인은 임신 6주,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,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